

**이동환 목사**

#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신하나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

**(민변 소수자위원회, 이동환 목사 변호인단)**

# **I . 2022년 정직 2년 관련 재판 경과**

# 1.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중 ‘함께 하는 축복식’ 집례

- 2019. 8. 31.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
- 1,000여명의 시민 참여, 성소수자 단체 및 정당,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시민단체, 각국 대사관 참여
-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대한성공회 소속 김돈희 신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임보라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함께 하는 축복식’ 진행
- 축복의 의미로 꽃을 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
- 예문은 “이 땅의 모든 성소주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



사진 출처 : 코람데오닷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2.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재판 : 2년 정직

### 고발 및 기소

- 감리회 소속 보수적인 목회자들(인천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 기독교대한감리회 총청연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고발장 제출
- 고발인 부적격 사유 발견 :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 기각
-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 : 직접 원고 고발, 기소
- 기소 이유 : 이동환 목사의 축복식 집례가 교리와 장정 1403단(범과의 종류) 제3조 제8항 (이하 '이 사건 장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해당

### 선고

-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2020. 8. 21.과 2020. 9. 29. 두 차례의 기일 진행
- 2020. 10. 15. 원고에게 **정직 2년**의 벌칙 선고
- 이는 교리와 장정 1405단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정직 기간

### 3. 총회 재판위원회 재판 : 2년 정직 확정

#### 기일 진행 상황

회차	일자	내용
1회 기일	2021. 2. 22.	- 재판 비공개에 대한 피고인(원고) 항의로 기일 연기 - 이후 2반 전원 기피신청하여 받아들여짐
2회 기일	2021. 3. 26.	- 재판위원장 제척사유 발견되어 기일 연기
3회 기일	2022. 1. 25.	- 기소를 담당한 경기연회 심사위원장과 서기가 모두 불출석하여 기일 연기
4회 기일	2022. 6. 13.	-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서기 출석으로 기일 진행
5회 기일	2022. 6. 27.	-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측 불출석, 피고인(원고) 측의 동의로 기일 진행
6회 기일	2022. 7. 8.	-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측에서 재판위 구성(6인) 문제 삼음. 재판위에서 구성 관련 재 검토하겠다면서 무기한 기일 연기함
7회 기일	2022. 10. 6.	- 기일 재개, 변론 종결
8회 기일	2022. 10. 20.	- 판결 선고 (상소 기각)

## 4.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5086)

### 소장 접수

- 2023. 2. 2. 소장 접수
- 대리인단 : 최정규, 박한희, 조윤희, 신하나, 정이명화, 김민아, 임한결, 허자인, 마태영, 조은호
- 민변 담당 간사 : 서한솔

기일	날짜	내용
1회 기일	2023. 8. 30.	- 원고 소장 및 준비서면 진술 - 피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 진술 - 원고의 문서제출명령(교회 재판 기록)에 대한 피고의 의견서 제출 및 채부 결정 위해 기일 속행
2회 기일	2023. 10. 18.	- 원고 준비서면 진술 - 원고 홍송수, 황인근, 이정배, 박경양, 권인숙 의견서 제출 - 피고 준비서면 진술 - 피고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 위해 기일 속행
3회 기일 (예정)	2024. 4. 3.	- 변론 종결 예정

## 4.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 : 쟁점

<b>사법심사 대상성</b>	<p><b>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b></p> <p>이 사건 판결과 관련한 쟁점은 종교 교리 해석의 문제로서 순전히 종교단체인 피고 교단의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관한 것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p>
	<p><b>원고(이동환)</b></p> <p>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교리와 장정 1403단 제3조 제8항 ‘동성애 찬성·동조’(이하 ‘이 사건 장정규정’이라 합니다)는 신앙의 기초인 교리가 아닌 하위규범인 장정에 불과하고, ② 종교 공동체 내의 결정이어도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되며, ③ 이 사건 판결은 교리와 장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p>
<b>절차의 하자</b>	<p><b>원고(이동환)</b></p> <p>① 불성실한 재판으로 2개월내 재판을 마쳐야 함에도 2년의 기간이 도과하였고,                  ② 재판 방청을 불허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③ 변호사를 1명만 출석하게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p>
	<p><b>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b></p> <p>① 판결 선고 및 재판 기간은 직무상의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②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단체 내부의 권리에 불과하며                  ③ 변호인의 일부가 출석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p>

## 4.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 : 쟁점

### 내용의 하자

#### 원고(이동환)

- ①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장정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률명확성원칙과 죄형균형원칙을 위반
- ② 이 사건 장정규정은 원고의 양심을 침해
- ③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 ④ 원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 → 이 사건 판결은 무효
- ⑤ 또 원고의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에 불과하여, '동성애 찬성·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 ① 이 사건 장정규정은 형벌이 아닌 징계에 불과하여 죄형법정주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교리를 가진 교단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나 예견할 수 있음
- ② 피고 교리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할 때, 원고는 교역자로서 피고 교리를 따라야함
- ③ 표현의 자유는 피고 교단을 탈퇴하여 표현을 충분히 하면 족할 문제
- ④ 피고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원고 개인의 종교적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⑤ 동성애를 이성애와 다르게 취급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명백히 동성애를 찬성·동조하는 발언



#### 4.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 : 1심 판결(2024. 8. 21.)

---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II. 2024년 출교 관련 재판 경과

# 1.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재판 : 출교

## 고발 및 기소

- 경기연회심사위원회는 2023. 6. 8. 이동환 목사 기소
- 기소 이유 : 정직 2년 판결 선고 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기독교대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1403단(범과의 종류) 제3조 제2항, 제4항, 제8방 위반
- 기소절차 하자 : 심사위원과 고발인이 같은 지방회에 속한 경우 심사위원은 제척되어야 하는데(교리와 장정 1417단 제17조), 이를 간과하고 기소
- 공소기각 결정 : 심사위원회 2023. 7. 17. 기소 취하여 제출, 재판위원회 2023. 8. 3. 공소기각 결정 선고
- 심사위원회 2023. 9. 8. 이동환 목사에게 동일한 사건(기감경일재 제2023-30호)으로 다시 심사하겠다고 출석 요청, 대리인단은 위 사건은 이미 종결이 되었고, 따라서 다시 심사 및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장이 새롭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
- 2023. 9. 19. **동일한 사건으로 재기소**

# 1.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재판 : 출교

## 기소장 내용

- ① 피고발인은 2021. 3. 13. 오마이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교회가 하락세를 겪기 시작한 것은 교회 재부의 문제점 때문이에요. 횡령과 성범죄 등 권력형 비리들이 터져나왔죠. 교회는 반성은커녕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어요. 권력집단은 적을 상정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해요. 교회는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어요.” 라고 발언을 하였고, 2021. 7. 22.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한국 교회의 소수자 혐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략)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진전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계교로 써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 하였다.**
- ② 피고발인은 상소심 절차가 진행중인 2020.12. 18. 온라인으로 진행된 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여 축복식을 집행하고, 2021. 6. 18.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하여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하고, 2021. 10. 6. 한신대 신대원 채플시간에 설교자로 참석하여 설교 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자 축복식을 재현하고, 2022. 7. 16.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큐앤에이 단체의 부스를 만들어 참가하여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 1.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재판 : 출교

## 기일 진행 상황

회차	일자	내용
1회 기일	2023. 1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내 통지 안 함, 불출석</li> </ul>
2회 기일	2023. 1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차 하자 지적하며 불출석사유서 제출</li> <li>재판절차 중지 요청</li> </ul>
3회 기일	2023.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회 기일을 최종기일로 하겠다고 통지하여, 이동환 목사 및 대리인 출석</li> <li>기피신청서 제출하여 재판부 교체 시도</li> <li>기피 신청 기각</li> <li>절차 관련 문제 제기</li> <li>증인신문 진행하기로 함</li> </ul>
4회 기일	2023. 1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측 주신문사항을 어제 송달해줘서 반대신문 준비 불가</li> <li>고발인측이 증인신청. 심사위원장이 아닌 고발인 대리인이 신문을 진행하려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li> <li>기일 공전</li> </ul>
5회 기일	2023.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인신문 : (고발인측) 박해서, 박운순, (피고측) 김해인, 김형국</li> <li>최후진술</li> </ul>
6회 기일	2023. 1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판결 선고 (출교)</b></li> </ul>

# 1.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재판 : 출교

## 피고발인 주장

### - 절차 관련

- ① 종결이 된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재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교리와 장정에 따른 절차인, 고소·고발장 제출, 화해조정, 심사회부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이지만, 심사위원회는 이미 종결된 기감경일재 제2023-30호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새롭게 고소·고발장 접수도 없이 재차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기소하였다.
- ②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1409단 제9조 제2항은 “제3조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 고 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위 조항은 고소의 경우 피해자라면 범과에 대한 제한없이 할 수 있는 반면, 고발권은 일부 중대 범죄에 한정하는, 이른바 ‘고발한정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고발권 없는 목사와 장로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③ 교회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기본 근거로 하되 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 즉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에는 재기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와 재기소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9의 규정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사위원회의 기소 취하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상, 심사위원회가 같은 사안으로 채권자를 재기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 되었어야만 하지만, 실제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사실이 없다.

# 1.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재판 : 출교

---

## 피고발인 주장

### - 실체 관련

- ① 피고발인의 모든 발언은 교회의 위기를 염려하는 것으로 모함, 악선전이 아니다.
- ② 피고발인이 큐앤에이 단체를 발족하여 대표를 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기능과 진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니다.
- ③ 피고발인의 행위는 동성애 찬성, 동조와 관련이 없다.

# 1.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재판 : 출교

## 판결 내용

### - 절차 관련

- ① 이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와 유사하지만 교회 재판, 징계 재판이므로 형사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고소, 고발 없이 제척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기소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 ② 교리와 장정 1409단 제2항은 고발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감리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범과이다.

### - 실체 관련

- ① 피고발인의 2021. 7. 5. 포럼 발언은 교회의 위기를 염려하는 것으로 모함, 악선전이 아니지만, 2021. 3. 12. 발언, 2022. 7. 22. 발언은 모두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한 것이다.
- ② 피고발인이 큐앤에이 단체를 발족하여 대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회의 기능과 진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③ 기존 정직 2년 재판과 유사한 행위이고, 재판위원회는 입법사항까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이는 동성애 찬성, 동조에 해당한다.



## 2. 총회 재판위원회 재판 : 출교 확정

### 기일 진행 상황

회차	일자	내용
1회 기일	2024. 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발인, 피고발인 주장 정리</li> <li>각 증인신청 받아들일지 판단 위해 속행</li> </ul>
2회 기일	2024. 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인신문 : (고발인측) 김진권, 민승길 (피고측) 김승섭, 박경양</li> <li>최후진술</li> </ul>
3회 기일	2024.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결 선고 (상소기각, 출교)</li> </ul>



## 2. 총회 재판위원회 재판 : 출교 확정

### 판결 내용

#### ① 모함 악선전

- 해당 범과가 명예훼손적 사실관계에 한정한다 볼수 없고 가치판단도 포함
- 피고인 발언은 모두 모함 악선전에 해당

#### ② 동성애 찬성동조

- 재판위는 교리장정 적용하는 사법기관. 입법의 위헌을 판단하는 기관 아님
- 이 사건 쟁점 동성애 옳고 그름 문제 아님. 오직 찬성동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행위가 동성애 찬성동조임은 명백. 쿼어퍼레이드 참석자들도 이거 알고 있었을것. 그럼에도 이걸 부정하는건 모순

#### ③ 재판비용

- 이처럼 원심판결 문제없으나 재기소 이전 비용까지 피고인 부담은 부당. 재기소 이전 936만원은 연회가 부담

#### ④ 절차 : 원심과 같은 결론

### 3. 재판절차정지신청 가처분(안양지방법원 2023카합10093)

#### 기일 진행 상황

- 2023. 10. 10. 신청서 제출
- 신청취지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소등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재판절차(기감경 일재 제2023-30호)와 2023. 9. 25.자 직임정지 처분(기감경제 2023-250호)의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
- 2023. 12. 19. 심문진행, 심문종결



사진 출처 : 대리인단 텔레그램 방

### 3. 재판절차정지신청 가처분 : 가처분결정

---

#### 주 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연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23. 12. 8. 출교판결(기감경일재 제2023-30호)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3. 재판절차정지신청 가처분 : 가처분결정

#### 판결 내용

####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주장: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결의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

나. 법원의 판단:

- 원칙적으로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
- 구체적 권리·법률관계 분쟁이 있고, 징계의 당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법심사 가능
- 본 사건의 경우:
  - 목사직 관련 분쟁으로 신앙적 정체성과 관련됨
  - 출교는 전 세계 감리교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본안소송 1심에서 적법성 인정 및 채권자 승소
-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

### 3. 재판절차정지신청 가처분 : 가처분결정

#### 2. 피보전권리 소명

##### 가. 절차상 하자 가능성

-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고발 대상 범과가 제한되어 있음
- 이 사건 범과는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 부적법한 고발에 근거한 권징기소는 무효일 수 있음

##### 나. 징계 수위의 부당성

- '교회 모함 및 악선전' 관련:
  -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고려 필요
  - 비판의 이유, 목적, 표현 수위 등 종합적 고려 필요
- '동성애 찬성 · 동조 행위' 관련:
  - 동성애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 고려
  - 헌법상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원칙 고려
  -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채권자의 평소 활동 등 종합적 고려 필요
- '출교'의 중대성:
  - 최고 수위의 징계로, 종교적 지위 및 헌법상 자유에 직접 영향
  - 과거 출교 사례와 비교 시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

### 3. 재판절차정지신청 가처분 : 가처분결정

---

#### 3. 보전의 필요성 소명

- 본안소송의 특성상 가집행선고 불가
- 본안소송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 예상
- 출교로 인한 종교활동 제한은 금전배상으로 회복 어려움
- 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 출교판결 효력정지만으로 직임정지처분도 효력 상실
- 별도의 직임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은 불필요

### III. 이 사건 판결의 내용



# 1. 본안 전 항변 : 각하

---

## 1. 사법심사 대상 여부

- 교회 권징재판: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 아님
- 종교단체 내부 제재: 교회 자율에 맡김
- 예외: 구체적 권리/법률관계 분쟁 존재 시

## 2. 확인의 이익 부족

- 정직 2년 기간 이미 만료
- 구체적 권리/법률관계 주장 없음
- 정직판결 무효 ≠ 출교판결 무효

## 2. 가정적 판단 : 절차적 하자 없음

---

### 1. 부적법한 고발에 의한 기소 주장:

- 법원은 교리와 장정 제[595]조 제95항 제3호 5에 따라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고발이 적법하다고 판단
- 고발한정주의를 선언한 것이 아니며,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고발이 교리와 장정의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 2.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

- 코로나-19 상황, 다수의 방청 희망자, 변호인 수 등을 고려할 때, 방청인원 제한이 공개재판권을 과도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 3. 기록열람등사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

- 재판 종결 전 원고가 충분히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다.

###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

- 코로나-19 상황, 서면 제출 등 다른 변호 활동 가능성, 교회법상 재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 출석 제한이 과도한 침해는 아니다.

### 5.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

- 교리와 장정의 재판기간 관련 규정은 훈시규정, 총회 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특성, 재판 지연의 의도성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지연이 판결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 6. 무기대등의 원칙 위반 주장:

- 교회 내부의 종교재판은 국가의 형사소송과 차이가 있어 형사소송법상 무기대등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2. 가정적 판단 : 실제적 하자 없음

---

가. 처벌규정의 명확성:

- "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 는 충분히 해석 가능한 개념이다.

나. 기본권 침해 여부:

-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원고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다. 교리 해석 문제:

- 법원이 교단의 교리 해석에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라. 원고 행위의 해석 :

- 퀴어문화축제에서의 축복식 집례는 객관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찬성·동조 행위로 볼 수 있다.

## IV. 이 사건 판결의 비판 지점

# 확인의 이익 및 절차적 하자

---

## 1. 확인의 이익에 대한 기계적 판단

- 정직기간 도과를 이유로 확인의 이익 부정
- 지속적인 불이익 상황 고려 부족
- 추가 고발 가능성
- 교회 내 직위 제한
- 출교 판결의 원인으로 작용

## 2. 종교재판의 절차적 하자 간과

- 적법한 고발에 의한 기소 문제 무시
- 재판 진행의 심각한 지연 (2년 소요) 문제 경시
-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절차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의 문제

# 실체적 하자

---

## 3.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

- '찬성'과 '동조'의 의미 불명확성 간과
- 성적지향을 '옳다고 판단하여 수긍하거나 따르는 행위'로 오해
- 축복식 집례를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로 판단한 오류

## 4. 동성애 반대를 기독교 교리로 인정

- 교리와 장정의 구분 무시
- 성경 해석의 다양성 고려 부족, 일부 기독교인의 정치적 의견을 전체 교리로 오인

## 5. 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차별적 성격 간과
- 헌법상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가능성 검토 부재
-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 사이의 균형 고려 미흡

A decorative graphic featuring a light blue horizontal bar across the middle. On the left, a large blue circle contains the text '감사합니다'. Above and below the bar are smaller teal circles. A dark blue horizontal line is positioned below the bar, extending from the left edge.

감사합니다